

의견서

1. 제 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견		
4. 기타		
<p>『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』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17. . . .</p> <p>의견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</p> <p>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	